

2. 정책 동향

□ 정책 이슈: 기업 감사위원회 설립

- (최근 동향) 정부는 기업내 감사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방침
 - 당분간은 기존의 감사 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 가운데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고, 장차 감사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할 방침
 -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2/3는 반드시 사외이사가 담당
 - 기존의 감사는 事後 감사 위주였지만, 감사위원회는 업무 시작단계에서부터 개입할 수 있으며, 부실 감사를 하는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을 짐
- (찬성론) 지배주주의 독단에 의한 폐해를 막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감사위원회 제도가 필수적임
 - 기존의 감사 제도는, 지배주주의 밀착 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
 - 이로 인해 선진국들의 불신감을 초래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, OECD와 세계은행 등에서도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립을 권고하고 있음
 -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 감사에 의한 지배주주 견제 기능이 강화될 뿐 아니라,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事前的인 경영 개입으로 인해 기업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음
- (신중론) 현실을 감안할 때, 감사위원회 제도는 기업들의 경영 애로만 가중시키고 예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
 - 현재 국내에는 사내 이사가 소수에 불과한 업체가 많은데,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에게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음
→ 감사위원회 이사는 각종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고 배상책임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보수를 줘야 할 것임
 - 선임권이 지배주주에게 있는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보다는,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계열사 임직원의 직계존비속이 배제되는 현행 감사 제도가 독립성 측면에서 더 우월할 수 있음

□ 정부 정책 동향 (3. 23~29)

예상청(3. 29) 재정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한 「예산회계법 시행령」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월 가능 예산의 범위 확대: 연도말의 무리한 집행 방지 - 재해 구호·복구비의 개선 지출: 신속한 재해 지원 -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및 순차적인 예산반영제도 도입: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 예방 - 수입대체경비 제도 확대: 정부 시설의 활용도 제고
재정경제부(3. 28) 국정개혁 보고 회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과세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99년 내에 제정 - 사전적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사후 관리에 역점 -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방식을 신용평가 등급제로 전환 - 기업대출 방식은 기업별 충신용한도 제도로 운영
공정거래위원회(3. 28) 외자유치 촉진을 위하여, 외국인 합작회사에 대한 계열분리 요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 합작회사의 계열사 심사 기준을 지분과 임원구성 관계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 ·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면, 지분율에 관계 없이 계열사에서 제외
재정경제부(3. 26) 4월1일 시행될 외환거래 자유화 관련 「외국환거래 규정」 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의 1년 만기 단기외화 차입 자유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예외: 해당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 초과 기업,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어음 신용등급 A 미만 기업,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BBB 미만 기업
금융감독위원회(3. 26) 적기시정조치의 탄력적 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2%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퇴출과 강제 합병 등을 명령할 방침 - 신용금고 업계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적기시정조치를 완화
여야 경제협의회(3. 26) 「수출보험법」 개정 합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도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보증 협용 - 유망한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무역금융 협용 - 수출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급격한 금리 변동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일정액을 보상
법무부(3. 23) 기업내 감사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하위법인 은행법과 증권거래법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지는 추후 결정 -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일정 비율은 사외 이사의 참여를 의무화

(정 반석 bsjoung@hri.or.kr ☎724-4045)